

AB1266 법안 원문

캘리포니아주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Section 1.

교육규정(Education Code)의 Section 221.5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21.5.

(a)주 정책에 따르면 비학과 과목이나 선택과목 및 선택 과정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 수업이나 과정은 해당 과목이나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b) 교육구 (School District)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에 따라 수업이나 과정을 등록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단 Title 2 의 Division 4-Part 28-Chapter 5.6.(Section 51930 으로 시작) 에 해당되는 수업은 제외한다.

(c)교육구는 다른 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업 또는 과정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한쪽 성의 학생들에게 특정 수업이나 과정을 등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 학교 카운셀러, 교사, 강사, 관리자 또는 지원자는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한쪽 성의 학생들에게 반대 성의 학생들과는, 즉 학생의 성별에 기준하여 직업 프로그램이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으며, 직업이나 고등교육 기회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직업 상담이나 수업과정 선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기존에 관습에 따라 학생의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직업의 가능성이나 직업과 연계된 과정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으로 살펴봐야한다. 학부모나 법적 보호인은 직업 상담과 Grade 7 에 대한 수업과정부터 시작되는 수업과정 선택 이전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Section 48980 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최소한 한번 이상은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상담 과정이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e)특정 체육교육활동 또는 스포츠에 한쪽 성의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도, 양쪽 성별 모두에게 참가가 허용되어야 한다.

(f) 학생들은 자신의 기록에 나와있는 성과는 관계없이, 체육팀이나 경기와 같은 성별에 따라 분리되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야하며, 학생기록에 나와있는 성별에 개의치(상관없이) 않고, 자신이 (말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시설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글 번역: www.TVNEXT.org on 10/10/2013

영어 원문: Assembly Bill No. 1266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AB1266